

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
일부개정조례안(1246)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!

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
성북구 제4지역의 이 승 로 의원입니다.

□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 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
□ 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□ 이 개정안은 첫째, 장식조명과 관련하여, “한정된 기간 동안 설치”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만 현재의 점등과 소등시간을 좋은빛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에서 “한정된 기간동안 설치” 규정을 삭제하여 한강교량 장식조명 등과 같은 상시조명에 대해서도 점·소등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울 야경의 아름다움을 알리고,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자 하며,

둘째, 좋은빛위원회의 심의대상 조명기구를 상위법인 「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」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.
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, 본 개정안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-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